

[일련번호 : 17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**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산출 부적정**

관 련 기 관 **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**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동주민센터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배정계획 및 교부 알림」 등에 따라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할 때에는 도로과의 ‘동 주민센터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배정계획 및 교부 알림’ 공문에 따라 매년 상/하반기의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, 평일 주간 및 평일 야간·휴일 등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인부임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* 도로과에서 고시한 인부임 단가

- 평일 주간 : 2023년 하반기 20,230원 / 2024년 상반기 20,690원

- 평일 야간(22~06시) 및 공휴일: 2023년 하반기 30,350원 / 2024년 상반기 31,040원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제설기동반 인부임을 산출·지급 시 평일 야간시간대 적용 시간대 (22시~06시)가 아님에도 야간단가를 적용하는 등 총 2건의 인부임을 부적정 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부적정 지급 내역

근무자	근무일시	지급금액 (A)	적정지급 금액(B)	과다지급액 (A-B)	부적정 내역
	2023.01.06.(금) 18~24시	117,760원	78,520원	39,240원	주간 시간(18~22시)에 야간 단가 적용
	2023.01.06.(금) 18~24시	117,760원	78,520원	39,240원	주간 시간(18~22시)에 야간 단가 적용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과다지급한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78,48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,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